

의안번호	제 298 호
의 결 연 월 일	2008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 의 자	최재옥 의원 외 7
발의연월일	2008년 12월 1일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98
----------	-----

발의연월일 : 2008년 12월 1일
발의자 : 최재옥, 김광수, 임현,
이종호, 이범윤, 정윤숙,
최광우, 최미애

□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관련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충청북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도지사는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해 교육감과 협의, 선도·교육활동 장려,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함(안 제3조)
- 나.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고 지역위원회의 구성은 11인 이내로 함(안 제5조)
- 다. 교육감이 수립한 '지역 학교폭력 예방대책 계획' 을 심의·조정 확정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기능을 정함(안 제6조)
- 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의 효율적 운영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7명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음(안 제7조)
- 마. 학교폭력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법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안 제8조)
- 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음(안 제10조)

※ 조례안 : 11조 부칙으로 구성

□ 의안 전문 : 붙임

□ 관계법령 발췌 : 붙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폭력예방교육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파급·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 체계(CYS-Net) 등을 활용하여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학교내외에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의 전문인력, 배움터지킴이 등을 선발하여 희망하는 학교에 배치 활동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학교 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① 지역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교육감이 수립한 「지역 학교폭력 예방대책계획」을 심의·조정 확정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및 청소년 관련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 등) ① 지역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5조에 따라 7명 이내의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가 관장하는 주요안건 및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지역위원회 위원 발굴, 선정 협의
2. 지역위원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실무협의
3. 학교폭력예방대책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자료 수집활동
4. 학교폭력예방 관련시책, 건의사항 등 사전검토
5. 학교폭력사건 자료요청 및 대처방안 공동강구
6. 그밖에 지역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토의 및 채택
7. 「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또는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기관의 물색

③ 위원장은 충청북도 청소년업무담당 관련과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전담부서 장학사
2. 충청북도 청소년업무 담당사무관
3. 충청북도경찰청 청소년업무 담당공무원
4. 전문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자
5.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⑤ 위원의 임기중 제4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재임기간내 당연직으로 하고, 제4호 및 제5호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실무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⑥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지역위원회 회의개최 15일 이전에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 ⑦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⑨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충청북도 청소년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 ⑩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제반경비는 충청북도가 부담한다.

제9조(표창) 도지사는 학교폭력이 없는 건전하고 명랑한 교육환경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등 공적이 있는 관련기관·단체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상담요원, 자원봉사자, 학교의 교사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

관·단체로 하여금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 발췌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지역의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지역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한다.

② 지역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교육감 및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제16조제1항 제2호·제3호 또는 제1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치료 및 교육을 담당할 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⑦ 교육감은 기획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에 관할 구역 안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관할 구역 밖의 학교폭력 관련 사항 중 관할 구역 안의 학교와 관련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기획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②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소집 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기획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위원장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부단체장이 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해당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임명

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시·도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시·도 교육청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해당 시·도의회 의원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
 3. 시·도 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검사·변호사
 6.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한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 ⑤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위원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⑥ 지역위원회에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역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할 간사를 둘 수 있다.
- ⑦ 지역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획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본다.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7명 이내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실무자 및 민간의 전문가로 구성한다.